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 산정 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4조에는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구립 ■■■■■■■■■■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등 총 5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가 미반영 되었거나, 반영 후 준공 시 보험 또는 공제증서가 미제출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